

□ 관련 규정

**<한-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OCP 제4조 제3항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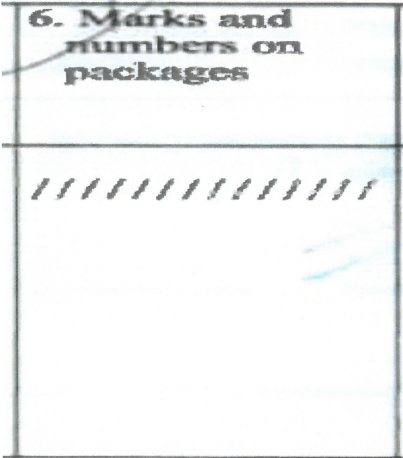
다.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

라. 상품명, 수량 및 중량, 포장의 표장 및 번호,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

**<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(별지 제12호 서식)>**

다.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기재

□ 제6란 예시(샘플)

미기재(공란)		올바른 기재 (B/L, 인보이스 등의 Marks란 내용을 기재)
	⇒	